

[붙임2]

교육훈련부서 주관의 민·관 교육훈련기관 대상 및 요건

■ **교육 기관** : 교육훈련기관·행정기관·민간기관

■ **교육 방법** :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

■ **대상 교육훈련(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)**

-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른 기본교육과정

- 시행령 제5조의 3에 따른 전문교육과정

- 시행령 제3장에 따른 직장훈련을 통한 전문교육과정 포함

- 시행령 제4장에 따른 국내외 위탁교육훈련

※ 민간교육기관의 해당 여부는 교육기관 설립목적, 직무와의 관련성, 교육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

■ **교육시간 요건**

- 1일 7시간 이상 운영되는 교육과정

- 단일 교육과정으로서 1일 7시간 미만인 경우는 2일 이상의 교육시간을 합산하여 7시간 이상이면 인정

· 다만, 사이버교육은 총 차수시간 등을 감안하여 시간별로 인정 가능

■ **학사관리 요건**

- 평가 및 수료기준, 수료점수 미달자에 대한 조치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학사 관리 기준 마련

* 출석·과제물·필기시험·실기시험 등 교육목적에 적합한 방법의 평가 실시

■ **절차적 요건**

- 교육훈련부서의 교육명령(사전협의)을 득하여 교육 이수

※ 다만, 국가기관이나 시·도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부서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교육명령(사전협의절차) 생략 가능